

[별표 13] <개정 2004.3.29, 2006.2.24>

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(제122조제3항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과태료부과금액
1.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1호	200만원
2.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	법 제101조제1항제2호	400만원
3.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	법 제101조제1항제3호	500만원
4.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4호	300만원
5.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	법 제101조제1제5호	300만원
6.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6호	100만원
7.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7호	200만원
8.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8호	500만원
9.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9호	200만원
10.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10호	150만원
11.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11호	200만원
12.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12호	100만원
13.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13호	100만원

14.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14호	150만원
15. 법 제59조제1항 또는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	법 제101조제1항제15호	300만원
16.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	법 제101조의2제1항제1호	부표의 금액
17.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	법 제101조제2제1항제2호	부표의 금액

[부 표]

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시 과태료부과금액

위 반 행 위	과태료부과금액
1.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가.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기간(이하 이 호에서 "해태기간"이라 한다)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미만인 때 나.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상 3월 미만인 때 다.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상 6월 미만인 때 라.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상 12월 미만인 때 마.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2월 이상인 때	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
2.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가. 제107조의3제5호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나.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(1)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 센트 미만인 때 (2)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 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때 (3)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퍼 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때 (4)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30퍼 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때 (5)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 센트 이상인 때	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 취득세의 4배 취득세의 5배

※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